

대학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면세해야 한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 상 식



대학가는 늘 많은 이슈가 있다. 대학 교수들에게도 이슈는 항상 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색다른 이슈가 있다. 올해 들어서 정부가 사전 예고 없이 내린 ‘대학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 폐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 정책에 상당히 반하는 조치로, 교수들 사이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대학에서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활동은 산업체와 연계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대학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조항 폐지’는 산업체와 연계된 연구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아이러니하게도 ‘창조경제’를 중요시하는 현 정부가 사전 예고 없이 시행하였으니 교수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학교수들에게 어울리지도 않을 듯한 ‘대학의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라는 색다른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이슈가 대학가에 있다는 이야기를 현 정부의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들으면 필시 ‘정부는 사전 예고 없이 대학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을 폐지’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어리둥절할 것 같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만을 보면,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이슈가 엉뚱해 보일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서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대해서 분명히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살펴보면 동 시행규칙에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고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등에 관한 연구용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예전과 같이 올해도 적용이 된다. 변화가 없는 조항들이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하다. 하지만 ‘대학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조항 폐지’에 대한 대학가 이슈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생소한 산학협력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례조항이 종료되어서 생긴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에 명시되었던 ‘산학협력단에서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련된 특례조항이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된 것이다.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모든 연구용역 과제들 담당한다. 따라서 특례조항의 종료는 대학 교수들에게는 ‘대학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조항 폐지’로 보인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호는 대학의 연구용역에 관련되는 상당히 중요한 조항이어서, 이 조항이 지난해와 올해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 시행령 제45조 제2호는 ‘종교·자선·학술·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특례 조항을 지난 2013년까지 두었다.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특례 조항은 2006년 2월 9일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 시에 신설된 면세 일몰 조항이었는데, 그 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특례 조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어 왔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산학협력단에게 적용되는 면세대상 연구용역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적용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범위에 한정하지 않고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연구용역에 폭넓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세법 개정에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특례 조항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2013년 말로 종료된 것이다.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특례 조항은 일몰 조항이므로, 설사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대학의 연구용역 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5조 2호의 면세대상 범위를 보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는 종래와 같이 명시되고 있으나, 산학협력단은 특례 조항의 종료와 함께 면세대상 범위에서 사라졌다.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

이슈진단 및 분석

단체와 동등한 면세혜택 대상에서 조차 제외됨으로써, 명실상부한 학술단체인 대학을 사실상 학술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재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으로 진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대학은 학술연구단체이자 기술연구단체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행 부가가치세법으로는 대학의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조차도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설령 부가가치세법상 ‘산학협력단에서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여도, 면세적용에는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된다. 과세대상인 일반연구용역과 면세대상인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수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이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임을 보여야 한다. 교수가 자신의 연구용역을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이라고 주장하여도, 세무당국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일반연구용역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세무당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관련된 세법상 예규나 판례를 살펴보면,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용역을 학술연구용역이라고 주장하여도, 법원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연구자가 추후의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연구용역에 대하여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무당국에 질의를 하였다. 연구자가 질의 대상인 연구용역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서술해서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의 회신 내용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술·기술의 연구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제되는 것임.’이었다. 질의한 연구자에게 회신 내용은 불만족스러울 뿐이다. 그럼에도 세무당국의 회신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세무당국은 개별적인 연구용역에 대하여 용역 시작 시점에서 분명히 판단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특례 조항의 종료는 산업체에도 혼선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체는 산학협력단에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예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해왔다가, 뒤늦게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특례 조항의 종료를 인지하고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를 고민하게 된 것이다. 산업체 역시 산학협력단에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인지 ‘학술·기술의 연구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학술·기술의 연구의 단순 응용과 이용은 필수적이다. 반대로 학술·기술의 연구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는 연구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을 개발하는 사례가 많다. 연구초기에는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이 분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연구수행 도중에 학술·기술의 연구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도 연구 성과물을

완성할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 아이러니하게도 세무상의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러한 이유로 과세대상인 연구용역과 면세대상인 연구용역의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은 산업체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사실 산업체 입장에서는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과세대상이든 비과세대상이든 크게 상관없을 수 있다. 모든 연구용역과제에 부가가치세를 부여하고 나중에 환급받으면 된다.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이라고 부가가치세를 부여하지 않다가 추후에 심각한 세무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학협력단 입장에서도 과세대상인 연구용역과 면세대상인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의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이라고 부가가치세를 부여하지 않다가 추후에 심각한 세무적인 불이익을 역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은 모든 연구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산학협력단에서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결국 사실상 면세적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관련 규정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5조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2조는 대학 교수들에게 무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보는 교수들은 부가가치세를 전체연구비에 포함시켜서 사실상 연구비가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표명한다. 모든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여는 중소기업과 자치단체에게 재정적 압박이 될 수 있고, 부가가치세를 전체연구비에 포함시켜서 사실상 연구비가 축소할 수 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전체연구비에 포함시켜서 사실상 연구비가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교수들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특례 조항의 종료로 ‘대학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조항 폐지’로 인지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연구비 축소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좀 더 거시적으로 보아도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특례 조항의 종료는 납득하기 어렵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에 상당히 반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대학이 ‘창조경제’에 기여한 활동은 산업체와 연계된 연구 활동이고, 그 중심에는 산학협력단이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 못하는 사실이다.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며,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의 조직이기 때문이다. 창조경제가 화두가 되는 최근 들어 그 근본인 산·학·연협력에서의 중간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창조경제에서 대학은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산·학·연연구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단계에 있고, 산·학·연연구공동체는 지역의 특화산업을 개발·육성하고 벤처 및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며,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여 공급하는 등 창조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 산·학·연연구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시기까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까지 시행되었던 면세조항의 일몰 연장이 산·학·연연구공동체 형성 및 지역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

이슈진단 및 분석

역의 면세 규정이 폐지되어, 기업과 대학간 추진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이 크게 위축될 위기에 있다. 거시적인 국가경제의 활성화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서 산학협력단의 모든 연구용역에 대한 면세 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모든 연구용역에 대한 면세 특례 조항은 대학의 연구용역이 교육용역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측면에서도 설득력을 지닌다고 본다.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학생의 교육·실습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비의 대부분은 학부·대학원생 인건비(장학금)로 이는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 양성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진 공익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5조 의 면세범위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필자소개

김상식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고려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에, 고려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기술지주회사설립인가자문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혁신정책위원회 위원, 전국산학협력단장 협의회 부회장, 고려대학교 연구처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산학협력단장과 창업보육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다. 논문과 특허로는 전기전자분야에서 250여 편의 SCI 논문을 게재하였고, 2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